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12. 1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64호로 2012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2012.9.22)되어 대통령령 규정에 맞게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수수료 징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종목 신설 (별표 중 1호 다목 및 2호 마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수수료 신설

(지역경제과): 2,000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항에 따른 공장 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신설

(지역경제과) : 1,000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홍보관광과) : 4,000원

나. 수수료액 변경 (별표 중 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차목)

종 목	해당부서	단위	수수료 (개정전)	수수료 (개정후)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문화체육과	1건	50,000원	10,000원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변경등록신청	문화체육과	1건	25,000원	5,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부동산 정보과	1건	20,000	10,0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의약과	1건	20,000원	10,0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의약과	1건	20,000원	1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수수료	홍보관광과	1건	10,000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홍보관광과	1건	10,000~ 17,500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분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청	홍보관광과	1건	해당수수료+ 5천원	20,000원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지역경제과	1건	10,000원	20,000원

## 4.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표준금액을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수수료 종목 신설 3종, 수수료 요율 인하 13종, 수수료 요율 인상 1종으로
- 수수료 종목 신설은 안 별표 제1호 다목 4)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수수료 2,000원 신설

- 안 별표 제1호 다목 5)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 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 신설
- 안 별표 제2호 마목 26)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4,000원 신설
- 수수료 요율 인하는 안 별표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 됨.

종 목	해당부서	단위	수수료 (개정전)	수수료 (개정후)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문화체육과	1건	50,000원	10,000원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변경등록신청	문화체육과	1건	25,000원	5,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부동산 정보과	1건	20,000	10,0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의약과	1건	20,000원	10,000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의약과	1건	20,000원	10,000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61조제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수수료	홍보관광과	1건	10,000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홍보관광과	1건	10,000~ 17,500	5,000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항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청	홍보관광과	1건	해당수수료+ 5천원	20,000원

- 수수료 요율 인상은 안 별표 제2호 차목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 됨.

종 목	해당부서	단위	수수료 (개정전)	수수료 (개정후)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지역경제과	1건	10,000원	20,000원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편차가 높게 나타난 경우 전국적인 통일 수수료에 추가하여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 우리구 조례로 규정된 수수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수료의 금액이 50%범위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조례를 조정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50%범위로 조정하여 수수료 징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